

『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마주시 의원 외 4명

2. 제안이유

-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많은 곳에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임대기준 및 임대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여 영농애로 및 농가일손 부족을 해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농업기계 임대기준 변경(안 제8조)
 - 임대기간 : 출고일 · 입고일 제외 → 출고일 · 입고일 합쳐서 1일
 - 입고시간 :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→ 당일 오후 5시까지
-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변경(별표)
 - 장기 임대시 연간 임대료 기준 추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농번기 수요가 많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를 위해 임대기간 및 임대시간을 조정하고 장기 임대하는 경우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임대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가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